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후 재등록 기준 완화〉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7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657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후 재등록 기준 완화(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7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04.

3. 회 부 일 : 2026. 2.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종전 기준(330㎡)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과 조례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및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후 재등록 기준 완화(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전시시설 면적 기준 대신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 ----- ----- <u>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¹⁾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정의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3조제3항²⁾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³⁾ 및 [별표 21의 5]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2.5.23.(법률 제11449호) 개정 이전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330㎡ 또는 660㎡ 이상 중 자율적으로 규정하였음⁵⁾.

2012.5.23.(법률 제11449호, 2012.11.24. 시행) 개정⁶⁾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⁷⁾,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36호)에서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를 신설하여 전시시설 연면적을 660㎡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게

4)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1.17.][법률 제11190호, 2012.1.17.,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 서울시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660㎡ 이하의 전시시설 면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더라도 그 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서울특별시조례 제5487호 부칙 제2조, 2013.5.16.).

6)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7)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11.24.][법률 제11449호, 2012.5.23.,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2.5.23.><시행일 2012.11.24.>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였음⁸⁾.

2015.8.11.(법률 제13486호) 개정에서 현재의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조례와 무관하게 시행규칙상 등록기준(660㎡ 이상)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고, 이 법률의 부칙 제2조⁹⁾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에서 종전 기준(330㎡)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강 또는 경영상 어려움¹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려는 경우, 도심지역의 특성상 추가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¹¹⁾이 있음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2.12.][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부칙 <제13486호, 2015.8.11.>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10) 신문기사, 「얼어붙은 중고차 시장…주인 기다리는 차량 즐비」, 동아일보, 2023.1.18일자

11) 손진석, 「이병윤 서울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해야”」, 비즈월드 신문기사, 2024.1.30일자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치구의 인구 규모에 따라 경과 규정¹²⁾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¹³⁾를 해소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갖춘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도심 지역의 지가 상승과 대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¹⁴⁾을 고려할 때, 건강상 이유나 일시적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등록하려는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형성한 정당한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음.

반면,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 재등록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부지를 확장하거나 신규로 장소를 마련한 기존 사업자 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진입한 신규 사업자와 비교할

12) 서울시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660㎡ 이하의 전시시설 면적으로도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더라도 그 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서울특별시조례 제5487호 부칙 제2조, 2013.5.16.)

13) 서울시 내에서 인구 50만명 미만 자치구의 사업자는 조례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재등록이 가능한 반면, 같은 서울시 내라 하더라도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등)의 사업자는 조례상 경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음.

14) 특히 중고차 매매단지의 경우 사실상 용도변경이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때, 임차료·부지 비용 등 고정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안정 및 신뢰보호와 강화된 기준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한편,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지만, 부칙 자체도 독립된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본칙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적용례는 신법·구법의 변경과정에서 신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면, 경과조치는 신법·구법의 효력 일부를 신법의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바, 개정안의 취지를 경과조치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휴업, 폐업 또는 등록 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등록 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¹⁵⁾과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도

15)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바, 등록 취소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휴업의 경우 현행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등록이 유지되고 재개업 시 별도의 신규 등록 없이 재개업 신고만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셋째, 제안이유의 개정 취지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장소적 동일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개정 취지와 달리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나. 관계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중고차 매매단지는 사실상 용도변경·공간확보가 어렵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개선 요청 등을 고려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및 관련 단체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를 건의함(2023.12.27.).

서울특별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또는 부칙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함(2025.5.14.).

한국매매연합회는 개정 전 건축된 매매단지의 경우 구 등록기준 적용을 요청함(2024.12.16., 국토교통부에 공문 발송).

전국매매연합회는 개정 전 건축된 매매단지의 경우 구 등록기준의 적용을 요청함(2025.1.16.).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1

매매업 등록기준(전시시설 660㎡) 규정 연혁

- ('12.5.23^{'12.11.24시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개정 ☞ 등록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21의2 신설 ☞ 전시시설 연면적을 6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지자체는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시 종전 기준(보통 330㎡) 적용

- ('15.8.11^{즉시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단서 추가
☞ 특·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야 함(조례 적용 배제*)

* 서울 송파구/강남구/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총 5구, '24.12 기준)

* (개정 이유) 특·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도시미관과의 조화, 호객행위 방지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과 공익상 규제 필요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도지사가 균형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는 조례(부칙 포함) 적용이 배제되어 휴·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시에도 무조건 660㎡ 기준 적용

참고 2

자동차매매업(중고차) 관련 통계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최근 5년간('21~'25) 사업체 및 종사자 수(단위 : 개, 명) >

구 분	중 고 차 매 매 업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21년	6,220	35,735
2022년	6,794	34,087
2023년	6,278	33,376
2024년	6,371	33,173
2025년	6,338	34,983

□ 중고차 거래대수(이전등록) : 384만대('25.12월 기준)

* 매매업자 거래건수 중복(매입·매도) 고려 시 약 256만대로 추정(매매업자 129만, 당사자 127만)

< 최근 5년간('21~'25) 중고차거래(이전등록) 건수(단위 : 대) >

구 분	매매업자 거래	당사자 거래	합 계
2021년	2,572,333(66.4%)	1,299,988(33.6%)	3,872,321
2022년	2,468,520(66.2%)	1,257,629(33.8%)	3,726,149
2023년	2,439,904(63.6%)	1,323,807(35.2%)	3,763,711
2024년	2,524,970(66.0%)	1,300,051(34.0%)	3,825,021
2025년	2,570,478(67.0%)	1,267,002(33%)	3,837,480

* 매매업자 거래건수 = 매입차량수 + 매도차량수

** 매매업자 매도차량의 경우에만 성능·상태점검 필요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황(전국·한국)

구 분	설립일	회장	조합수	업체수	종사원수
전국연합회	'72.3.31	박동근 (경남조합장)	9개(32%)	2,339개(41%)	약 1.1만명
한국연합회	'06.7.25	엄태권 (경기조합장)	19개(68%)	3,402개(59%)	약 2.3만명